

## 평생교육사과정 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강대상)** 본 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은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
**제3조(이수과정)**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을 고르게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이수과목)**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[별표1]에 의한 평생교육관련과목에 일치되는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이수기준)**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이수는 평생교육사 2급은 10과목, 30학점(필수15, 선택15)이상, 평생교육사 3급은 7과목, 21학점(필수15, 선택6)이상 이어야 한다.

② 이수하여야 할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은 [별표 1]과 같다.

③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의 평균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되,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**제6조(평생교육현장실습)** ①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는 4주이상의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실습은 재학중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평생교육현장실습을 받고자하는 자는 실습 인정기관장의 승인을 본인이 협의하여 받아야 하며, 현장실습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평생교육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[별지서식 제2호]를 받아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평생교육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
**제7조(자격증신청 및 발급)** ①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한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[별지서식 제1호] 1부

2. 최종학력 증명서 1부

3. 최종학기 성적이 기록된 성적증명서 1부

4. 경력증명서 1부

5.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

6. 기본증명서 1부

② 평생교육사자격증 신청은 4학년부터 가능하며 소정기한 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한다.

**제8조(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)** ①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자격증을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교부(정정)신청서[별지서식 제3호]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평생교육사자격증(훼손,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) 1부

2. 기본증명서(성명 정정의 경우) 1부

3. 주민등록 초본(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) 1부

**제9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평생교육사자격증 및 학칙에 따른다.

부 칙(2010. 5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 평생교육관련 교과목]

평생교육관련 교과목

과정	구분	과목명
양성과정	필수	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		평생교육실습(4주간)
	선택	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
		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
<p>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/li> <li>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,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,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, 「평생교육법」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.</li> </ol>		





[별지 제2호 서식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]

### 평생교육현장 실습평가서

1. 실습기관명 :  
 2. 실 습 기 간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~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(    주간)  
 3. 실습지도자 :

직 명	성 명	담 당	내 용	비 고

4. 실습내용

제 1 주	제 2 주	제 3 주	제 4 주

5. 실습상황

실습생 성 명	학부(과)명	근 무 태 도 (10%)	자 질 (15%)	학습지도 능 력 (50%)	연구조사 활 동 (15%)	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(10%)	총평 (100%)	비고

위 사실을 증명함

년    월    일

실습기관장 (직인)

예원예술대학교 교학지원처장 귀하

